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(가지급)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-1241 (2016.3.25)

2. 위 근거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**조기지급(가지급) 종료시점을 2016년 2/4분기까지 추가로 연장**함을 알려온 바 안내드립니다.

가. 근거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규칙 제21조(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)

나. 대상 : 전체 요양기관 (채권 압류기관은 제외)

다. 적용기간 : 2016년 2/4분기까지

라. 내용 :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(90%)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

마. 제외기준 : 월 기준 요양급여비의 10%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, 6개월 이상 상계비용을 미상계하는 요양기관

\* 조기지급(가지급) 제외를 원할 경우 건보공단으로 문서신청(FAX : 033-749-6361), 공문 접수일 이후 분부터 가지급 제외. 끝.

**대 한 병 원 협 회 장**



수신처

병원장

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149 ( 2016.03.28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7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jyh@kha.or.kr